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87 발의연월일: 2025. 1. 7.

발 의 자:이춘석・위성곤・정준호

이연희 · 김윤덕 · 윤준병

윤종군 · 김영환 · 이원택

이학영 · 안호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·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소방업무환경은 일반적인 작업환경과는 달리 유해인자의 노출 형태 및 정도가 현장마다 다르고, 물리적·화학적 유해인자 외에도 소방공무원의 빈번한 긴급출동, 불규칙적인 생활, 감염 등 관련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실제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방청장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함(안 제15조).

법률 제 호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항 전단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소방업무환경측정의 구체적인 범위, 방법, 절차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소방업무환경측정 등) ①	제15조(소방업무환경측정 등) ①
소방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	
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	
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	
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	
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	
·평가(이하 "소방업무환경측	
정"이라 한다)를 <u>할 수 있다</u> .	<u>하여야 한다</u> .
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	
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	
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	
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소방업무환경측정의 구체적
	인 범위, 방법, 절차 그 밖에
	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
	<u>한다.</u>